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.

발 의 자 : 이주희 · 안도걸 · 김 현  
조승래 · 송재봉 · 이훈기  
정진욱 · 김기표 · 박민규  
박정현 · 김선민 · 전종덕  
손 솔 · 정혜경 · 김 윤  
오세희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, 시청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

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73조의3 및 제 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).

##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3조의3(인공지능기술 활용 여부의 고지 등) ① 방송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·방법·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8조제1항에 제10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5. 제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지 또는 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② · ③ (생략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